

기준일 공고

(주)블루홀은 상법 제354조 및 제527조의 3과 정관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, 소규모 합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,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 합병 관련 의결권(반대의사 표시)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(<http://dart.fss.or.kr>).

- 다 음 -

1. 기준일 : 2017년 7월 28일

2017년 7월 13일

주식회사 블루홀

대표이사 김강석

명의개서대리인

주식회사 국민은행